

노사협의회 규정

사업장 명칭 : 수원과학대학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전화번호 : 031-350-2000
대표자 성명 : 박철수
사업종류 : 교육
근로자수 : 계 103명 (여 53명)

노사협의회 규정

□ 제정 : 2018. 12.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 노사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공동이익 증진으로 건전한 학교발전과 직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본교에 설치하며,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2 장 협의회 구성

제5조(구성)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장) ①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위원 위촉

제10조(사용자위원 위촉) 사용자위원은 총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1조(근로자위원 위촉)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 및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 4 장 협의회 운영

제12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마다 1회 개최한다.

-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7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가타 토의사항
-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5 장 협의회회의 임무

제18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
2. 조합원과 관련된 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 및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행정 개혁에 관한 사항
7.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8.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9. 통상 관례에 의거 협의회 안건으로 인정되는 사항
6.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전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0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본교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4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 1.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이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고 충 처 리

제24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 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2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 보존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9-0-1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 1 호】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 위원 명단

노사협의회 위원

사 용 자			근 로 자		
직 책	성 명	날 인	직 책	성 명	날 인

고충처리 위원

사 용 자			근 로 자		
직 책	성 명	날 인	직 책	성 명	날 인

년 월 일

9-0-1 노사협의회 규정

【별지서식 제2호】 노사협의회 회의록

제 차 (정기 · 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보 고 사 항				
협 의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 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참석 위원 서명	사 용 자		근 로 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간 사				

9-0-1 노사협의회 규정
 【별지서식 제4호】 고충처리 면담서

고충처리 면담서	
상 담 일 자	
소속 및 성명	
고 충 내 용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처 리 결 과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height: 15px;"></div>
회 신 일 자	
상 담 위 원 : (인)	